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74 발의연월일: 2025. 4. 21.

발 의 자: 유준병 · 허성무 · 정동영

송옥주 • 박홍배 • 문대림

박희승 • 허종식 • 김태선

허 영·안도걸·서영교

백선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 국에서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'0'으로 만드는 탄 소중립을 선언하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.

우리나라는 지난 2021. 5. 21.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·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및 「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통과되었고,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·결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

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·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9973호) 및 「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97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 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4 및 제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의4(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(이하 "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 - ③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의5(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 - ③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
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4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8조의4(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
	운용계획서의 작성) ① 지방자
	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
	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
	분석한 보고서(이하 "온실가스
	<u>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"라</u>
	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	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
	안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
	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	③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
	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
	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	<u>정한다.</u>
<u><신 설></u>	제8조의5(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
	결산서의 작성) ① 지방자치단
	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를
	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
	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
	"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
	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
	<u>다.</u>
	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

서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
③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